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5. 12.

행정위원회

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17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5일

제115회(정례회)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우리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행정혁신 선도기관 및 시범 평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, 지방행정 및 공직자의 변화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"혁신기획단"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혁신기획단(한시기구) 설치운영
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"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둔다"를 "부구청장 밑에 혁신기획단(한시기구) 및 감사담당관을 둔다"로 한다.

- 부칙(신설) :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혁신기획단 존속시한) 혁신기획단 존속시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다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제102조(행정기구)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18701호)제6조 (한시기구 설치 운영)

○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- 2887(2005.10.19)

○ 서울시조직담당관-8021(2005.10.21)

- 기획예산과 혁신분권담을 행정혁신팀, 균형발전팀, 고재만족행정팀으로 분리-운영

○ 구청장방침 기획예산과 - 5276(2005.09.21)호

○ 예산조치 : 혁신기획단 설치운영에 따른 예산 확보

○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찬제)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(행정기구)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에 근거하여 한시 조직인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고자 하는 것으로,
- 법적근거인 대통령령 18701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의 한시기구는 "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을 때 존속기한을 3년 이내로 하며,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"하는 조건으로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(2005.10.19)에는 시·군·구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, 고객만족행정팀으로 확대하여 구성·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,
- 우리구의 경우 혁신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직은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내에 2004.7.20 설치·운영되어 오다가 2005.9.20임시조직인 혁신기획단의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5.10.5 인사발령 후 구본청 본관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혁신기획팀, 혁신지원팀, 연구개발팀 1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
- 우리구에서 2004.7.20 혁신분권팀 구성 이래 추진된 주요혁신업무 추진 실적은 혁신동아리 운영, 제5회 자치행정혁신전국대회 우수기관수상, 혁신사이버아카데미운영, 업무혁신방운영, 팀업무혁신추진,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선정(행자부) 등이며,
특히, 2005.9.5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받아 타 자치단체보다 탁월한 행정혁신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제안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혁신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.

4. 審査結果 : 原案可決